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

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

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정비함.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
(안 제619조의2)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7. ~ 12. 27., 2023. 12. 27. ~ 2024.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본문 중 “구내운반차”를 “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 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

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3조제2호 중 “토사나”를 “토사등이나”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제68조제1호 중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아웃트리거”로 한다.

제1편제7장제7절(제71조)을 삭제한다.

제86조제1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87조제9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92조제1항 본문 중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7호 중 “체인과 혹은”을 “혹은”으로, “마모(磨耗)”를 “마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제1항제2호 중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감응식”을 “감응형”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을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4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를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로 한다.

제1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구내운반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제198조 중 “암석”을 “토사등”으로 한다.

제223조 본문 중 “감응형(感應形)”을 “감응형”으로 한다.

제261조제1항제3호 중 “토출축”을 “토출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0조제5호 중 “적당한 소화설비를”을 “소화기 한 대 이상을”로 한다.

제295조제7호 중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을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 한다.

제477조부터 제48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제519조제3호 중 “관리방법”을 “관리 및 사용 방법”으로 한다.

제520조를 삭제한다.

제5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감시인을 1명 배치하고, 잠수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콧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협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제592조제1호 중 “인간면역결핍증”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과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제638조 중 “별표 2 제19호나목”을 “별표 2 제20호나목”으로 한다.

제6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를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5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편제12장제3절의 제목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를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로 한다.

제663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력”을 “중량물을 인력”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64조의 제목 “(작업조건)”을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로, “배분하여야”를 “배분해야”로 한다.

제6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중량물을 인력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6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중량물을 인력으로”로, “등”을 “등 근로자에게”로 한다.

제672조제2항 중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로, “제221조까지”를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

모”를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로 한다.

제67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로 한다.

별표 8 제3호 안전거리란의 단서 중 “화설비”를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중 “인간면역결핍”을 각각 “인체면역결핍”으로 한다.

별표 15의 감염병란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인간면역결핍항체”를 “인체면역결핍항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 6. (생략)</p> <p>7. 지게차 · <u>구내운반차</u> ·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 · 버킷(bucket) · 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p> <p>8. ~ 18. (생략)</p> <p>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p>	<p>제20조(출입의 금지 등)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u>----- -----</p> <p>8. ~ 18. (현행과 같음)</p> <p>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p>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생략)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신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생략)

<신 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

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략)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

1. (현행과 같음)

2. -----

----- 토사등이나 -----

3. (현행과 같음)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 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썩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 5. (생략)
제7절 통나무 비계

제68조(이동식비계) -----

-----.

1. -----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삭 제>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쌓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등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미터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쌓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목을 것

4. 비계 기둥·띠장·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
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
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
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
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
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
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
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
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
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
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
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
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
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
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
터 이내로 할 것

②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
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략)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① ~ ⑦ (생략)

⑧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합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흘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

-----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신 설>

<신 설>

<신 설>

⑩ · ⑪ (생 략)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 · 수송기계 · 건설기계 등의 정비 · 청소 · 급유 · 검사 · 수리 ·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 ①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

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
용 금지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7. 체인과 혹은 변형, 파손, 부
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할 것

----- 그러하지 않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
용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혹은 -----
-- 마모-----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
록 조치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
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
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
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

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
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
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생 략)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
크를 확실하게 거는 등 갑작스
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생 략)

② (생 략)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
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
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
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
크를 확실하게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감응형 -----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생략)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

-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 -----

-----.

제184조(제동장치 등) -----
구내운반차-----

-----.

1. ~ 4. (현행과 같음)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 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압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운반하거나 퍼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향타기 및 향밭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
-- 토사등-----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 감응형 -----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

3. -----토출측-----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년마다 ---

2. -----
----- 3년-----

상

3. (생략)

④·⑤ (생략)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추는 것

6. (생략)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추는 것

6. (현행과 같음)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

-----.

1. ~ 6. (현행과 같음)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p>8.·9. (생략)</p> <p>제6절 <u>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u></p> <p>제477조(격리) 사업주는 <u>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u></p> <p>제478조(바닥) 사업주는 <u>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u></p> <p>제479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u>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u></p> <p>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p>	<p><u>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u></p> <p>8.·9. (현행과 같음)</p> <p>제6절 <u>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500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뽑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4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

<삭 제>

의 제조·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
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
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
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83조(작업복 관리) ① 사업주
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
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
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
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
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삭 제>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8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

<삭 제>

<삭 제>

제51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

- 1. ~ 4. (현행과 같음)
-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가. 소음노출 평가
 -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 마. 정기적 청력검사
 -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관리 체계
 -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

-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생략)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2. (생략)

3.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4. (생략)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

에 종사하는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1. 2. (현행과 같음)

3.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감시인을 1명 배치하고, 잠수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 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 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신 설>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 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

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 -----

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 5. (생략)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

-----.

제592조(정의) -----
-----.

1.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2. ~ 5. (현행과 같음)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
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
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
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
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
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신 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
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
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
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
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
법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
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
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
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
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38조(사후조치) -----
----- 별표 2 제20호나목-----

-----.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

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
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
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
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3. (생략)

③ (생략)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인 조사를 해야 --.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
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
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
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
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
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 중량물을 인력-----

----- 노력해야 -----
-----.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

----- 배분해야 -----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중량물을 인력으로 -----

해야 -----.

1.·2. (현행과 같음)

제666조(작업자세 등) -----
----- 중량물을 인력으로 -----

----- 등 근로자에게 -----

야 한다.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생략)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 4. (생략)

⑥ ~ ⑪ (생략)

-----.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생략)
- ② (생략)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 ① -----

-----.

1. -----

-----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